

### 3. 지배구조

---

#### (1) 기업지배구조헌장

##### 前文

주식회사세아특수강(이하 "회사")는 안정과 다변화에 대응하여, 끊임없는 발전을 통한 도약을 목표로 한다. 아울러, 적극적인 ESG개선 활동을 통하여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, 더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고자 한다. 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본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한다.

회사는 본 헌장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균형 있는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.

#### 제 1장 주주

##### 제 1조 [주주의 권리]

- ① 주주는 주주권에 기반하여 주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.
- ②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결정되어야 한다.
- 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장소, 일시 및 의안의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안에 제공하여야 한다.
- ④ 주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,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## 제 2조 [주주의 공평한 대우]

- ①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,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.
- ② 주주는 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쉽게 설명되어야 하며,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. 또한 회사는 공시 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한다.
- ③ 회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여야 한다.

##### 제 3조 [주주의 책임]

- ① 주주는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3. 지배구조

---

②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,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.

## 제 2장 이사회

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기구로서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이사회는 관련 법령, 정관이 정하는 주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표이사 또는 산하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
### 제 5조 [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]

① 이사회는 내용 논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, 이에 따라 운영되기에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.

② 이사회에는 독립적이고 실질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, 사외이사를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이사회는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지닌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,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.

### 제 6조 [사외이사]

① 사외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회사의 의사결정에 독립적으로 참여하고,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지원 및 감독한다.

② 사외이사는 필요 시 회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사외이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.

③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임·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### 제 7조 [이사회 운영]

① 이사회는 분기 1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, 필요한 경우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,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다.

③ 회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유지·보관한다.

④ 회사는 개별 이사의 출석률과 주요 공시 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여부 등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.

⑤ 이사는 필요 시 원격통신수단(화상회의 등)을 활용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.

### 3. 지배구조

---

#### 제 8조 [이사회 내 위원회]

- ① 이사회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각 위원회는 각 이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성하며,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.

#### 제 9조 [이사의 의무]

-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. 이러한 판단이 회사와 주주에게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경우,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.
- ② 이사는 직무상 얻은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.

#### 제 10조 [이사의 책임]

-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- ② 회사는 이사의 책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,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.

#### 제 11조 [평가의 보상]

- ① 경영진의 경영활동 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며, 그 결과를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한다.
- ② 이사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.

## 제 3장 감사

#### 제 12조 [감사]

- ① 회사는 감사를 1인 이상을 두며, 감사 중 1인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.
- ② 감사는 관련 법령,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.
  -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활동에 대한 적법성 감사
  - 기업재무활동에 대한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
  - 외부감사인 선정, 변경, 해임 등
- ③ 감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.

#### 제 13조 [외부감사인]

-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### 3. 지배구조

---

- ②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시 회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규 위반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확인한 주요사항을 상근감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

## 제 4장 이해관계자

### 제 14조 [윤리경영]

- ① 회사는 윤리규범을 제정하고, 이를 게시한다.
- ②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·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규범을 모든 경영활동에서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.

## 제 5장 시장에 의한 경영 감시

### 제 15조 [공시]

- ①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,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,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기업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성실하며 정직하게 공시한다.
- ② 회사는 정기공시 이외에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적시에 명확하게 공시한다.
- ③ 회사는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을 것이며, 이해관계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.

### 제 16조 [기업 경영권 시장]

- ④ 회사의 인수, 합병, 분할, 및 주요 사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.